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591
----------	-----

2025. 10. 14.
경제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. 9. 30. 이성수 의원 대표발의(9명 발의)

나. 상정의결

- 제33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(2025. 10. 14.)
“ 수정가결 ”

2. 제안이유(제안설명 : 대표발의자 이성수 의원)

- 강남구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일상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을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심리적 외상 치료 및 지원에 관한 근거 조항 신설 (안 제7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청소년 기본법」, 「긴급복지지원법」 등

나. 예산조치 : 논의 필요

5. 검토의견(전문위원 : 이주현)

가. 개정 취지 및 배경

○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정책

- 2017년 정부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인정하고,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함. 현행 「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정신건강복지법”이라 한다)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, 정신건강상 문제와 관련하여 상담을 제공하는 등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음.

○ 심리적 외상

- ‘심리적 외상’이란 심각한 심리적 충격·거부와 같은 단기적 반응과 공황·악몽·대외관계 어려움·외상 후 스트레스장애(PTSD)·두통 등 장기적 반응이 수반되는 정신적 외상을 말함.
- 서울특별시 정신건강복지센터 <서울시민 정신건강 인식 조사>¹⁾에 따르면 ‘지난 1년간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었다’는 서울시민은 41%인 것으로 확인되며, 트라우마 극복을 위하여 ‘스트레스 관련 심리 상담’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33.8%로 높게 나타남.

○ 강남구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현황

- 2025년 9월말 기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는 정신건강 문제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모든 강남구민을 대상으로 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직접 [A]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, <마음건강검진 사업>을 통해서도 ‘심한 스트레스 우울감 등 기타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주민’에게 [B]마음건강검진 및 상담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.²⁾

1) 서울특별시 정신건강복지센터, 2025. 7., <2025 서울시민 정신건강 인식 및 실태조사>

나. 검토 내용

○ 지역주민의 심리적 외상 치료를 위한 지원

- **현행 제7조제1항**에는 구청장이 관리·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강남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열거되어 있고, 이 조문에 근거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모든 강남구민을 대상으로 [A]상담서비스와 [B]마음건강검진 및 상담 비용 지원이 이루어짐.
- **안 제7조제1항제10호** 신설 입법취지가 모든 강남구민(지역주민)을 대상으로 제공 중인 서비스 및 비용 지원 외에 추가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 또는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라면, 몇 가지 점검할 사항이 있음.
- 이 조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는 강남구민(지역주민)임이 전제되어 있고, 일부 서비스를 연령(아동·청소년)이나 집단(중독자)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만 제공대상자를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 조문도 그와 같은 맥락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.
- **현행 제7조제1항제7호**에 재난심리지원은 트라우마센터와의 거버넌스 체계에 기반한 것임. 심리적 외상, 정신적 외상, 심적외상, 트라우마 등은 표현을 달리할 뿐 ‘정신건강에 위기를 맞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다다른 심한 스트레스·우울감 등 기타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상태’ 이므로, 기존 제공 서비스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도 있음.

2) 방문 횟수에 따라 차등 지원(1회차: 4만원, 2~3회차: 각 2만원)

< 규정 비교 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의 건
제7조(수행사업) ① 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9. (생 략) <u><신 설></u> 10. (생 략) ②·③ (생 략)	제7조(수행사업) ① _____ _____. 1. ~ 9. (현행과 같음) 10. <u>지역주민의 심리적 외상 치료를 위한 상담·치료비 지원 및 교육·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사항</u> 11. (현행 제10호와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	제7조(수행사업) ① _____ _____. 1. ~ 9. (개정안과 같음) 10. <u>심리적 외상 치료를 위한 상담, 교육 등에 관한 사항</u> 11. (개정안과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

- **현행 제7조제1항**은 직접 수행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문이고, **현행 제9조(예산지원)**은 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문임. 즉, 치료비는 구청장이 ‘... 등의 ... 지속적인 치료를 위하여’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에 근거하여 지원할 수 있으나, 열거된 지원대상자에 심리적 외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함. 다만,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포함되지 않는 범위임.

다. 종합 의견

○ 사업방향 구체화 필요

- 중앙정부는 국가적 재난에 대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권역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, 서울특별시는 자살위험에 노출된 사람 및 기관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정신건강과에서,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·치료에 대해서는 청소년정책과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.
- 담당부서인 건강관리과는 수행사업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이 개정조례안으로 추가되는 사항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사업방향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, 그 방향이 심리적 외상 치료에

특화된 상담 및 교육 등이라면 사업 추진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해 보임.

※ 관계 법령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[시행 2024. 10. 22.] [법률 제20511호]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, 정신질환을 예방·치료하며,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·조사와 지도·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영·유아, 아동, 청소년, 중·장년, 노인 등 생애주기(이하 "생애주기"라 한다)에 따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, 우울·불안·고독 등의 정신건강상 문제와 관련하여 상담을 제공하는 등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15조(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(이하 "보건소"라 한다)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15조의2(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(이하 이 조에서 "심리지원"이라 한다)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
2.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, 복구,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

④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2. 해당 권역에 거주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
3. 해당 권역의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

※ 참고 자료

[붙임 1] 지자체별 청소년 심리적 외상(트라우마) 지원 관련 조례 현황

(2025. 9. 기준)

순번	지자체 명칭	조례 제명	제정일자	소관부서
1	서울특별시	서울특별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	2019. 09.	청소년정책과
2		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(자살위험에 노출된 사람, 기관 종사자 등)	2011. 01.	정신건강과
3	서울특별시 강서구	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	2019. 07.	아동청소년과
4		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(청소년 심리적외상 긴급지원단 운영)	2022. 02.	아동청소년과
5	서울특별시 구로구	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에 관한 조례	2023. 08.	아동청소년과
6	서울특별시 성북구	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	2021. 11.	아동청소년과
7		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(자살위험에 노출된 사람, 기관 종사자 등)	2012. 12.	의약과
8	서울특별시 노원구	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	2023. 05.	아동청소년과
9	서울특별시 금천구	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(가정 밖 청소년 한정)	2024. 05.	아동청소년과
10	서울특별시 성동구	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(가정 밖 청소년 한정)	2024. 07.	아동청년과
11	서울특별시 영등포구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(가정 밖 청소년 한정)	2024. 12.	아동청소년과
12	서울특별시 양천구	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(자살위험에 노출된 사람, 기관 종사자 등)	2012. 04.	의약과
13	서울특별시 서대문구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(자살위험에 노출된 사람, 기관 종사자 등)	2013. 07.	의약과
14	서울특별시 강남구	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(자살위험에 노출된 사람, 기관 종사자 등)	2013. 03.	건강관리과

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
7. 토론 요지 : “생략”

8. 심사 결과 : “수정가결”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10. 기타 사항 : “없음”

붙임 1.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
대한 수정안

2.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